

공고 제 호

##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 (정정, 말소) 공고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(정정, 말소)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공동농업 경영체명	공동농업경영체 지정 등록번호	처분결과 및 사유

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4제3항에 따라 등록정보 (정정, 말소)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
직인